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8
----------	-----------

제출일자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등을 삭제하여 위탁가능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제공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전면 위탁 관리함에 따라 읍·면장이 실시하던 시설 관리 및 점검 의무사항을 축소
- 「수도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지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안 제22조)
- 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면 위탁관리에 따른 읍·면장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일부 축소
 - (1)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 → 관리자(안 제4조, 제8조)
 - (2) 읍·면장 → 관리자(안 제7조)
- 다. 「수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조문, 환경부 조례 개정요청사항 반영 및 관련지침 등에 의한 용어 정비
 - (1)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
→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안 제1조)
 - (2)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안 제6조)
 - (3) 마을 신규입주세대에 수도설치 관련 입회비(마을발전기금) 요구 금지규정 신설(안 제14조)
 - (4)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마을상수도 → 소규모수도시설
(안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안 제1조~제6조, 제8조~제9조, 제11조~제17조, 제19조, 제21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47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1,746백만원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5. ~ 4.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이 조례”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란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당해 지역의 군수”를 “군수”로, “당해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사용자대표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란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으로, “연계 하여”를 “연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을 “관리자는”으로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를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를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10조에 따른”으로 “재·보수”를 “개·보수”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읍·면장은”을 “관리자 및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읍·면장은”을 “읍·면장 및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폐지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수도법」 제 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

한 규칙 제 5조 규정에 의거”를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마을상수도 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른”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징수할 때에는”로,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을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 중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를 “사용자”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를 “지역여건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를 “대표자는 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재한다”를 “주관한다”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한다.

제20조 중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 중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를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호·제2호, 제21조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 행	개 정 안
<p>다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u>군수가 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u>연계 하여</u> 검토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 <u>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u>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u>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u> 일체를 관장한다.</p> <p>② <u>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u>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읍면장은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u>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취수원 보호) ① <u>관리자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u>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u>별표1에 의하여</u>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u>관리자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u>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수질검사) ① <u>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p>	<p>-----<u>소규모수도시설</u>-----</p> <p>-----.</p> <p>② ----- <u>제1항에 따른</u>-----<u>수립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u>-----</p> <p>-----</p> <p>----- <u>연계하여</u> -----.</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 <u>관리자는</u> -----</p> <p>-----<u>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u>-----.</p> <p>② <u>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u>-----<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u>-----</p> <p>-----<u><후단 삭제></u>-----</p> <p>③ ----- <u>소규모수도시설</u>-----</p> <p>-----.</p> <p>제5조(취수원 보호) ① -----<u>소규모수도시설</u>-----</p> <p>-----</p> <p>----- <u>별표에 따라</u> -----</p> <p>-----.</p> <p>② ----- <u>소규모수도시설</u>-----</p> <p>-----.</p> <p>제6조(수질검사) ① ----- 「<u>수도법</u>」 제29조 및 제55조와 <u>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u>-----</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u>제1항에 의한</u> 수질검사결과를 <u>제16조의 규정에 의한</u>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점검) ① 읍·면장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군수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u>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u>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해당 읍·면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8조(개선조치) ① <u>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장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u>제10조의 규정에 의한</u>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u> 우선적으로 <u>재·보수</u>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u>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u>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u>----- -----.</p> <p>제7조(점검) 관리자는 <u>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u></p>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u>제6조에 따른</u>----- ----- <u>제7조에 따른</u>----- ----- ----. <후단 삭제></p> <p>제9조(유지보수) ① ----- ----- -----<u>제10조에 따른</u> ----- ----- <u>소규모수도시설</u> ----- -----<u>개·보수</u>----- -----<u>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u>----- -----.</p>

현 행	개 정 안
<p>② 읍·면장이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 시설</u>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군수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u>소규모수도시설</u>----- ----- ----- -----</p>
<p>③ 해당 읍·면장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개량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u>관리자 및 읍·면장은 소규모수도시설</u>----- -----.</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로 인하여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읍·면장은</u>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군수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 <u>소규모수도시설</u>----- ----- <u>소규모수도시설</u>----- ----- <u>읍·면장 및 관리자</u>는 ----- -----.</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 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 ----- ----- <u>소규모수도시설</u> --폐지할 때 ----- ----- ----- ----- <u>아니한다</u>.</p>
<p>② 군수가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 <u>소규모수도시설</u> --폐지할 때 ----- -----</p>
<p>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규정</p>	<p>제12조(건강진단) -----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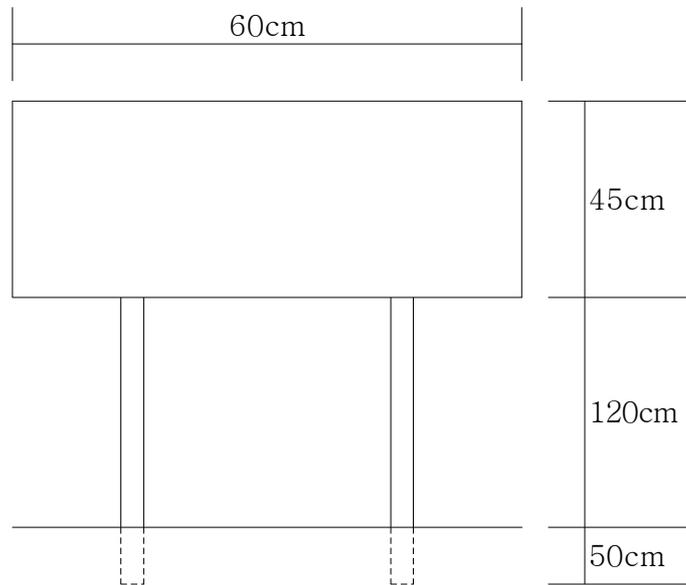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에 의거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라 <u>소규모수도시설</u>----- -----<u>사람에게</u>-----.</p>
<p>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u>마을상수도 시설</u>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마을상수도</u>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u>제1항의 규정에 의거</u> 수도요금을 <u>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p>제13조(요금징수) ① ---- <u>소규모수도시설</u>----- -----<u>소규모수도시설</u>-----</p> <p>② ---- <u>제1항에 따른</u> ----- -----<u>징수할 때에는</u>----- -----<u>「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u>----- -----.</p>
<p>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u>제13조의 규정에 의한</u> 수도요금을 <u>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u>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p> <p>②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관리비용) ① ---- <u>제13조에 따라</u> -----<u>징수하지 않는 지역은</u> <u>소규모수도시설</u>----- -----<u>소규모수도시설</u> ----- -----<u>범위에서</u>----- -----.</p> <p>② <u>소규모수도시설</u>----- ----- -----<u>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u></p>
<p>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u>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u>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u>지역 여건에 따라</u>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p> <p>② <u>협회의 대표자는</u> <u>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u>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u>주재한다.</u></p> <p>④ (생략)</p>	<p>제17조(구성) ① -----<u>사용자</u>----- -----<u>지역여건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u>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u>대표자는 사용자</u>-----.</p> <p>③ ----- -- <u>주관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u>의 관리 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u>기타</u>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제18조(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규모수도시설</u>----- ----- 2. <u>소규모수도시설</u>----- ----- 3.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p>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u>각호의1</u>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협회의 대표자</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생략)</p>	<p>제19조(개최) ① ----- <u>각호의 어느 하나</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대표자</u>----- --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u>마을상수도 협회의 대표자</u>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실비변상) -----<u>대표자</u> ----- ---<u>범위에서</u>----- -----</p>
<p>제21조(교육) 군수는 <u>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협회 대표자</u>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u>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u>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p>	<p>제21조(교육) -----<u>대표자</u>----- ----- ----- ----- ----- -----<u>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u>시-----.</p>
<p>제22조(관리위탁 및 대행업체 지정)</p> <p>① 군수는 <u>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업체(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탁관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u></p>	<p>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u>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u></p> <p>③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u></p>

[별표]

○○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 관련)

1. 규격



○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 바탕색 : 흰색

○ 글씨 : 청색

2.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 연락처 :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940-8420)

거 창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 관련)

관 리 번 호		거창군 제 호									
구 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읍·면									
	협의회대표	성 명				전화번호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인 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 1						심도 : m		
			집수정 2						심도 :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한 급수	1차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 시설	취 수 원	배 수 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개항목)					
	합격 여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량 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전 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 위치										

※ 시설폐지 시는 뒷면에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 관련)

관리번호	거창군 제 호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그 밖에			

※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 관련)

관리번호	거창군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내 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 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및 노후 수도시설 개·보수 비용

나. 관련조문

- 제4조(시설의 관리)⑤ 군수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국도비		486	480	480	480	480	2,406
	군비		1,261	1,250	1,250	1,250	1,250	6,261
	소계(a)		1,747	1,730	1,730	1,730	1,730	8,667
세입	국비		420	420	420	420	420	2,100
	도비		66	60	60	60	60	306
	소계(b)		486	480	480	480	480	2,406
총 비용(a-b)			1,261	1,250	1,250	1,250	1,250	6,261

3. 관련 의견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노후 수도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찬 복